

항 고 장

항고인 박 근 용

피항고인 서울지방검찰청
(처분검사 변광호)

서울지방검찰청 2001. 6. 11. 자 사건번호 2001형제 30307호(피의자 한스중
합금융주식회사, 조관행, 민병태, 회계법인 삼일)에 대한 각하처분에 불복하
므로 이에 항고를 제기합니다.

항 고 취 지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취소한다.

항 고 이 유

1.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존재

서울지방검찰청 변광호 검사는 항고인이 2001. 3. 21. 자로 제기한 별지목
록 피의자에 대한 고발에 대하여 같은해 6. 11. 자로 각하처분(첨부자료1. 고
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을 내린 바 있습니다. 각하처분의 이유는 「본건이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하여 추상적인 사실만으로 고발한 사안으로서, 혐의사
실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

정할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음」을 들고 있습니다(첨부자료 2. 공소부제기이유고지서).

2.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위법성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법합니다.

첫째, 검사는 본 건이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하여 추상적인 사실만으로 고발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사실은 금융감독원의 공개적인 보도자료(첨부자료 3.)를 근거로 한 고발이었습니다. 즉 추상적인 사실이 아니라 보도자료로 요약된 구체적 사실이며, 검사가 수사의지만 있었다면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에 의뢰하여 자료를 확보하고 철저한 수사를 할 수 있었던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검사는 고발인에 대한 형식적인 조사만을 마친 후 별다른 보강수사를 하지 않고 성급히 각하처분을 내림으로써 수사미진의 위법을 범하였습니다.

둘째, 검사는 ‘고발인이 혐의사실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음’을 탓하고 있습니다만, 고발인은 원래 범죄의 혐의있는 사실에 대하여 수사의 단서를 제공할 뿐이지 실제적인 수사의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발인들에 대한 사기 및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위반의 점은 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만으로도 그 범증이 뚜렷한 것이어서 검사가 수사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실제진실에 접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고발인의 자료제출의무를 언급하며 핑계대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셋째, 이 사건 고발은 개인의 권리구제 차원에서 제기된 것이 아니라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재벌의 전횡방지, 분식회계의 근절이라는 공익적 목적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즉 공익의 대변자이며 수사의 주체인 검찰이 먼저 인지수사를 했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정의와 경제개혁을 위해 애쓰는 시민단체의 종사자가 문제를 인식하고 고발에 나섰다면 검찰은 적극적인 수사로서 이에 화답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무유기에 가까운 무성의한 수사로 각하처분을 내렸으므로 이는 검찰의 사회적 역할에도 반하는 위법한 행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결론

따라서 위와 같이 본 건 고발에 대한 각하처분은 부당하므로 이 건 항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첨 부 자 료

1.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
2. 공소부제기이유고지서
3. 보도자료(금융감독원의 감리결과 지적 및 조치사항)

2001. 7. 16

항고인 박 근 용

서울고등검찰청 귀중